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 공정위, 부당특약 판단기준·예시 명확화 위해 관련 고시·심사지침 개정 -
 - 부당특약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4월 1일)에 이어 부당특약 관행에 따른 중소하도급업체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 유보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 전문건설업체의 44.0%가 유보금 설정 경험, 협의없이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47.2% (「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특약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 「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 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 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기업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부당특약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부당특약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종선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이수연 (044-200-4949)



<붙임 1> 「부당특약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I. 목적</p> <p>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I. 목적</p> <p>-----</p> <p>-----</p> <p>-----제6조의4</p> <p>-----</p> <p>-----</p> <p>-----</p>
<p>II. 부당특약의 유형</p> <p>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p> <p>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p> <p>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p> <p>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p> <p>라. <u>(신설)</u></p>	<p>II. (좌동)</p> <p>1. (좌동)</p> <p>가.-----제3조 제8항-----</p> <p>-----</p> <p>나. (좌동)</p> <p>다. (좌동)</p> <p>라. <u>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u></p>

(가)~(나) (생략)

<부당특약 예시>

①~⑤ (생략)

(3) 영 제6조의2 제1호 다목[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의 판단기준

(가)~(라) (생략)

<부당특약 예시>

①~⑥ (생략)

(4) 영 제6조의2 제1호 라목(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가)~(다) (생략)

<부당특약 예시>

①~⑥ (생략)

나. 영 제6조의2 제2호(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

(가)~(나) (현행과 동일)

<부당특약 예시>

①~⑤ (현행과 동일)

(3) 영 제6조의4-----

(가)~(라) (현행과 동일)

<부당특약 예시>

①~⑥ (현행과 동일)

(4) 영 제6조의4-----

(가)~(다) (현행과 동일)

<부당특약 예시>

①~⑥ (현행과 동일)

나. 영 제6조의4-----

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1)~(3) (생략)

(1)~(3) (현행과 동일)

<부당특약 예시>

<부당특약 예시>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전염병(예, 조류독감)의 창궐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② ----- 확산-----

③~⑤ (생략)

③~⑤ (현행과 동일)

다. 영 제6조의2 제3호[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단기준

다. 영 제6조의4-----

(1)~(4) (생략)

(1)~(4) (현행과 동일)

<부당특약 예시>

<부당특약 예시>

①~⑤ (생략)

①~⑤ (현행과 동일)

라. 영 제6조의2 제4호(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

라. 영 제6조의4-----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에 대한 판단기준

(1)~(2) (생략)

<부당특약 예시>

①~⑥ (생략)

4.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영 제6조의2
제5호 및 부당특약 고시에 따른 “부당
특약” 심사기준

가. (생략)

(1) 부당특약의 유형 제1호 가목[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의
판단기준

(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위탁내용” 이라
함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위탁받은 일시, 하도급대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등 수급사
업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
용을 말한다.

(나) (생략)

<부당특약 예시>

①~③ (생략)

(2)~(3) (생략)

(4) (신설)

(1)~(2) (현행과 동일)

<부당특약 예시>

①~⑥ (현행과 동일)

4. -----영 제6조의4

가. (현행과 동일)

(1) -----
법 제3조 제8항-----

(가) “법 제3조 제8항-----

-----.

(나) (현행과 동일)

<부당특약 예시>

①~③ (현행과 동일)

(2)~(3) (현행과 동일)

(4) 부당특약의 유형 제1호 라목[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

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 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의 판단기준

(가) (신설)

(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함은 ①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을 권리, ②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권리, ③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 ④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이를 지급받을 권리, ⑤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받을 권리, ⑥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나) (신설)

(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라 함은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다) 신설

(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부당특약 예시>

- ①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해당 공사의 준공 때까지 또는 준공 후 일정 기간까지 연기하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③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 의무와 무관하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에 대한 정산 지연 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정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완료 후 반환하여야 함에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이와 무관한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키는 약정

<정당한 사유 예시>

- ① 목적물을 납품·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수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p>나. (생략)</p> <p>다. 부당특약 고시 II. 부당특약의 유형 제3호에 대한 판단기준</p> <p>(1) (생략)</p> <p>(2) 부당특약의 유형 제3호 나목[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의 판단기준</p> <p>(가)~(다) (생략)</p> <p><부당특약 예시></p> <p>① (생략)</p> <p>② 고가 <u>사급재</u>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약정</p> <p>라.~마. (생략)</p>	<p><u>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의무 미이행의 범위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약정하는 경우</u></p> <p>나. (현행과 동일)</p> <p>다. (좌동)</p> <p>(1) (현행과 동일)</p> <p>(2) (좌동)</p> <p>(가)~(다) (현행과 동일)</p> <p><부당특약 예시></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고가 <u>사급자재(원사업자가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재 등)</u>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약정</p> <p>라.~마. (현행과 동일)</p>
--	---